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64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2. 16.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9. 9.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9. 12.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친구 A학생에게 연락이 와서 A학생 학생과 같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았고, 가해학생인 B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청구인에게 소지품을 맡겨서 청구인은 사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B학생이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켰지만 그 말을 듣지 않자 청구인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나. B학생이 피해학생에게도 청구인을 때리라고 시켜서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뺨을 때리자, 공포에 질려 있던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머리를 치고서 도망간 것으로, 청구인은 도리어 이 사건의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장에 있었던 여러 학생들은 청구인이 B학생의 강요에 의해 피해학생을 때린 것이 아니라, 자의로 강하게 피해학생을 때린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현장에 있었던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학생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줄 친구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청구인 포함 총 5명이고,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도 5명 정도가 있던 상황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때린 것은 B학생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관련학생들의 확인서, 학폭위에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 관련학생들의 각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에 대한 각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9. 8. 16. 오후에 B학생(△△△학교), C학생(◇◇◇학교)

가 A학생에게 연락하자, A학생과 같이 ***어린이집 옆 골목으로 가서 B학생, C학생, 피해학생을 만났다.

- B학생과 C학생은 피해학생이 A학생에게 C학생의 뒷담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학생을 폭행하면서 사람들을 피하여 이곳저곳 장소를 옮겨 다녔는데, 폭행현장에 D학생, E학생 등 여러 명이 더 있었고, B학생 등이 피해학생을 끌고 다니며 약 2시간 30분 정도 폭행했는데, 청구인도 1시간 넘게 같이 하면서 청구인도 직접 피해학생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때린 행위는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B학생 등이 청구인에게 소지품을 맡겨서 사건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B학생이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켰지만 그 말을 듣지 않자 B학생이 공포감을 줬고,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을 때리자, 청구인은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피해학생 머리를 치고서 그 현장에서 벗어났던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B학생과 C학생이 연락했던 A학생은 15분 정도만 사건현장에 머물다 떠났고 직접 신체폭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청구인은 B학생, C학생, D학생 등이 피해학생을 끌고 다니며 폭행과정에 1시간 넘게 같이 하였고,

피해학생은 B학생이 폭행과정에 청구인을 데려와 ‘들이 싸우라’ 고 했지만 싫다고 거부하자, B학생이 피해학생의 손을 잡더니 청구인 볼을 치자, 청구인이 ‘너 나 때렸지’ 라며 피해학생 뺨을 2-3대 때리고 머리를 쳤다고 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현장에 있던 관련학생들은 청구인이 자의로(세계, 진심으로) 피해학생을 때렸다고 말하는데, 실제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다 청구인이 피해자였던 선배들의 학교폭력 건 이후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피해학생과 사이가 벌어진 상태였다고 하며,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청구인 포함 총 5명이고, 이를 지켜본 학생들도 5명 정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때렸다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행동으로 판단되는바(F학생은 피해학생이 당하는 내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함),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학폭위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청구인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며,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없음(4점) 총 11점을 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6호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하면서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병과하고,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의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